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4

발의연월일: 2020. 8. 4.

발 의 자:노웅래·양경숙·김남국

강득구・전혜숙・윤재갑

안호영 • 권인숙 • 양정숙

아쥬(비) · 오영훈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규정에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20년도에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8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2019년도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임.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따라서 정부의 재량이 비교적 높아 국회가세계잉여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 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 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 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등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	류) ①
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	
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
	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에 발
	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_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